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6.

발 의 자 : 박상혁 · 진선미 · 박용갑
박수현 · 김한규 · 전현희
채현일 · 김준혁 · 최혁진
김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.

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.

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,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, 체격,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

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,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61조).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, 체격,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유치할 수 있다.

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감치대상자를 유치한 경찰서장,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행정안전부·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의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유치한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감치 등) ① · ② (생략)	제61조(감치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,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(留置)함으로써 집행한다. <후단 신설>	③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, 체격,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유치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감치대상자를 유치한 경찰서장,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행정안전부·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의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유치한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~ ⑥ (생략)	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